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92호)

2025.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안 제13조제2항)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8. 21.

다. 회 부 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안 제13조 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제2항).
-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제1호)
-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생략)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u>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u>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u> ----- -----

현행	개정안
<u>하는 기준에</u> 해당하는 자는 제 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신설> ③ ~ ⑤ (생략)	-----. -----. -----. 1. <u>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u> 2. <u>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u>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은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¹⁾에 대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1)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²⁾.

-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1회씩 ①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②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③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³⁾하고 있음.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2)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3.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 ④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그런데, 현행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은 정보보호 공시 제외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보유한 정보의 규모가 큰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부문 투자 및 인력 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인 일반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일반국민 전반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및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대상 기준을 이미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만의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현행 법령 체계상 제외 대상 삭제 등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를 통해 별도 입법 없이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현황을 공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